

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등에 관한 사항(제2조제1항 관련)

1. 수련기관

전문요원의 수련기관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이나 기관으로 한다.

가. 국·공립 정신병원

나. 전공의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

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 보건소(법 제13조에 따라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신병원(가목 및 나목 외의 정신의료기관 중 입원실의 100분의 10 이상을 개방병동으로 확보한 정신병원을 말한다)

1) 수련하고자 하는 분야의 1급 전문요원이 1인 이상 상시 근무할 것

2) 수련하고자 하는 분야의 1급 전문요원이 수련을 지도하도록 위촉되고 2급 전문요원 3인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2. 수련기관별 실습시간

가.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는 실습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수련하여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는 실습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전문요원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여야 한다.

3. 수련기관은 수련과정의 이수를 위하여 수련생을 상호 교류할 수 있다.